

지도관 직위의 종류(제7조 및 제10조 관련)

1. 기관의 장인 지도관

- 가.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·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
- 나.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·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
- 다. 감독·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

2. 부서의 장인 지도관

- 가.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직위
- 나.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직위
- 다.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직위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관

- 가.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
- 나.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

비고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관의 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(시·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)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.